보건복지부

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(어진동)
정부세종청사 10동
필수의료총괄과

3 0 1 1 3

원주우체국
요금별납

[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제출 안내문] 받는 사람

반송불필요

보건복지부

청렴韓 보건복지부

보 건 복 지 부

수신 의료기관장
(경유)

제목 '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제출 안내

1. 관련: 「의료법」 제45조의2,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3, 「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」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00호, '21. 3. 29.)

2.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3. 우리부에서는 **'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시기(9. 20.)** 및 **제출기간(7. 12.~8. 8.)** 등 자료 제출에 대한 사항을 심사평가원을 통해 각 의료기관에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.

4. 이와 관련, '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를 기한 내(8.8) 미제출한 기관은, **추가 제출기한인 '23. 8. 16.(수)까지 반드시 제출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* (제출방법) **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(biz.hira.or.kr)** → 인증서 로그인 → 모니터링 → 비급여 진료비용 송·수신 시스템(신) → **'요양기관 정보' 등록** → **의원급 또는 병원급 정기등록**
   * (원격지원 및 문의) 심사평가원 033-739-1988 (의원급), 033-739-1997 (병원급)

5. 아울러, **미제출 또는 거짓제출한 의료기관**의 경우 **「의료법」 제9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**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, 법률 의무 미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안내문 1부. 끝.

보건복지부장관

[붙임]

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자료제출 안내문

※ 동 안내문은 '23.7.26. 기준 미제출기관을 대상으로 발송하여, 이미 제출한 의료기관에도 발송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.

▶ **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자료 추가 제출기한을 안내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*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「의료법」 제92조(과태료)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◈ **(대상기관)** '23.3월 기준 개설 중인 **전체 의료기관**

◈ **(제출기한) '23. 8. 16. (수)**

※ 제출기한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접속자 급증으로 **원격지원 및 시스템 이용이 지연**될 수 있으니 **가급적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.**

◈ **(제출대상)** 총 565항목 중 현재 고지(운영)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별 금액 제출

【 '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항목 (총 565항목*) 】

* 「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」[별표1] 공개항목(총 616항목) 중 '22년 이후 급여 전환 및 삭제 등에 따른 정비

1. 비급여 진료비용

상급병실료(3항목), 교육상담료(7항목), 검체검사료(9항목), 병리검사료(6항목), 기능검사료(46항목), 내시경, 천자 및 생검료 (6항목), 초음파검사료(73항목), 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(2항목), 자기공명영상진단료(MRI)(74항목), 주사료(1항목), 이학요법료(10항목), 정신요법료(3항목), 처치 및 수술료(38항목), 모발이식술료(5항목), 시력교정술료(2항목), 치과 처치·수술료(20항목), 한방검사료(7항목), 한방 시술 및 처치료(8항목), 치과 보철료(14항목), 예방접종료(56항목), 치료재료(133항목), 보장구(11항목)

2. 제증명수수료

진단서(일반/건강/근로능력평가용), 사망진단서,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(신체적/정신적), 후유장애 진단서, 병무용진단서,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, 상해진단서(3주미만/3주이상), 영문진단서(일반), 확인서(입퇴원/통원/진료), 향후진료비추정서(천만원미만/천만원이상), 출생증명서, 시체검안서, 장애인증명서, 사산(사태)증명서, 입원사실증명서, 채용신체검사서(공무원/일반), 진료기록사본(1~5매/6매이상), 진료기록영상(필름/CD/DVD/USB), 제증명서 사본

※ 공개('23.9.20.) 이후 제출한 자료의 비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『병원급 수시 등록』, 『의원급 수시 등록』을 통해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해서는 고시 개정 예정으로, 고시 확정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.

◈ **(제출방법)** ① 우리원 누리집(www.hira.or.kr) ➤ ② 요양기관업무포털(biz.hira.or.kr) ➤ ③ 인증서 로그인 ➤ ④ 모니터링 ➤ ⑤ 비급여 진료비용 송·수신시스템(신) ➤ ⑥ **'요양기관 정보'** 등록 ➤ ⑦ **'병원급 정기등록'** or **'의원급 정기등록'** 제출

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(www.hira.or.kr) 접속

② 요양기관업무포털(biz.hira.or.kr) 접속

◈ 자세한 제출방법은 **'우리원 누리집'**과 **'요양기관업무포털' 공지사항** 또는 「병원급 정기등록」, 「의원급 정기등록」 **화면 내 게시물, YouTube (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방법, #의원급자료제출)** 참고

☎ 문의처: **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부(033-739-1988, 1997), 고객센터(1644-2000)**